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275449 판결 [사용료 및 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24. 9. 27.

판결 선고 2024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,453,367원과 그 중 38,433,547원에 대하여 2024. 5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.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지은희

별지